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4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 박형수・임종득・이종배

이만희 · 송석준 · 조배숙

곽규택 · 장동혁 · 엄태영

유상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국회법」 제121조는 국회 출석요구 대상을 국무총리·국무 위원 또는 정부위원을 기본으로 규정하면서,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 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·헌법재판소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·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도 출석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대 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사건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뿐만 아니라 「국회법」에도 명확한 출석요구 근거를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명시하여 국회의 출석요구 근거

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12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1조제5항 전단 중 "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,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"를 "다음 각 호의 사람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,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
-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. 다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하여 금 대리하여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21조(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제121조(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 구) ① ~ ④ (생 략) 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 여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 --다음 각 호의 사람의----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, 감사 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하여야 한다. 1.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 <신 설> 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, 감 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 2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. 다 <신 설> 만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 을 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차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 · 답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,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